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891
----------	------

제안년월일 : 2025년 6월 18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원형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11호), 성흠제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9호),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5.6.18.)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이원형 의원 외 16명 및 성흠제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피해에 대한 시장의 지원의무, 시민의 권리, 보험금 청구에 대해 명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비상 운행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이 모든 교통사고 피해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를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나.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다.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라.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에게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제1항)
- 마.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행대책에는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주요 노선의 감축·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
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u>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설>	<u>제4조의2(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u>
<신설>	<u>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u>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u>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u> <u>2. 주요 노선의 감축·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u> <u>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u> <u>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u> <u>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u>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u>제19조</u> (생략)	<u>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u> <u>제20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